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4
----------	----

2018. 12. 14.(금)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욱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8년 11월 21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2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12월 03일

-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욱 의원)

가. 제안사유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용어, 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의 중 내용상 중복으로 불필요한 “장애인가족 지원” 에 대한 정의 삭제 (안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신설에 따른 지원사업 확대 (안 제5조)
  -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추가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안 제8조)

### 3. 검토보고 요지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위탁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일부 용어, 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 2. 8.) 에 따라 신설된 법 제30조의2가 본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바, 이를 본 조례안 제1조(목적)에 근거 법률로 명시하였으며,
  - 본 조례의 직접적 위임 근거로서의 의미가 다소 약한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는 목적 기술의 간결성을 위해 삭제한 것으로 사료됨.

####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 안 제2조제1호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에 있어 “~ 따른 장애인”을 “~ 따른 사람”으로 개정된 것은, “장애인”이란 용어가 주는 차별성 및 위화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2조제2호의 “장애인가족”에 대한 정의는,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를 인용해 조문을 간결화 시켰고, 같은 조 제3호의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정의는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원사업)에도 동일하게 중복 규정되어 있는 바, 별도의 정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지원사업)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1항의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지만,
  - 본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2항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 또한 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수행기관, 즉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계약기간 5년의 의무 적용 대상 기관으로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직형태 및 기능을 볼 때, 타 장애인복지시설들과 달리 위탁기간을 꼭 3년으로 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 및 수탁기관 양자에게 긍정적이며,
  -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위임사무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바, 위탁기간의 연장 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에 따라, 장애인 지원 사업 내용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며, 입법예고와 해당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
----------	----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21일

발의자 : 이상욱, 박상돈, 박형용,  
심기보, 육미선, 최경천,  
임영은

## 1. 제안이유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용어, 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 중 내용상 중복으로 불필요한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정의 삭제 (안 제2조)
- 나.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 확대 (안 제5조)
  -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추가
- 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안 제8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8-58호
- 라. 협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마.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를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로, “장애인가족 구성원” 을 “장애인가족” 으로, “규정함” 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을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을 “종합적인 정책”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4조제2항제3호 중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제4조제3항 중 “적정한 지원계획” 을 “지원계획” 으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제6조 중 “지원 시책” 을 “지원 정책” 으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으로,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를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를 “위탁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중 “시행에 따라 필요한” 을 “시행에 필요한” 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 장애인가족-----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장애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p> <p>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p> <p>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p>	제2조(정의)	-----	-----.
	1.	-----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p>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u>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u>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제3조(도지사 책무) ----- ----- ----- ----- <u>종합적인 정책</u>----- -----.</p>
<p>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장애인가족 지원의 정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u></li> <li>3. <u>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u></li> </ol> <p>&lt;신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생략)</li> </ol> <p>③ 도지사는 <u>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u>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u></li> <li>3. ----- <u>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u></li> <li>4. <u>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 센터의 운영계획</u></li> <li>5. (현행 제4호와 같음)</li> </ol> <p>③ ----- <u>지원계획</u> ----- ----- -----.</p>

현행	개정안
<p>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가족의 돌봄 지원 사항</li> <li>2.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li> <li>3. 장애인가족의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li> <li>5. (생략)</li> </ol>	<p>제5조(지원사업)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li> <li>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li> <li>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li> <li>4. 장애인가족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li> <li>5. 장애인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li> <li>6. (현행 제5조와 같음)</li> </ol>
<p>제6조(자문기구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p>	<p>제6조(자문기구 활용) ----- ----- 지원 정책 ----- -----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 -----.</p>
<p>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① -----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8조(사무의 위탁) ① ----- ----- ----- ---- <u>위탁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u></p> <p>③ <u>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u></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u>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시행규칙) -----<u>시행에 필요한</u>----- --.</p>

## 관계법령 발췌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